

한-미 FTA 원산지 절차 요약

구분		한미 FTA						
발효일자		2012. 3. 15.						
협정국		미국						
원산지증명서	발급주체	수출자, 생산자, 수입자						
	서식	[권고서식]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9서식 또는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을 기재한 서류(정형화된 양식 없음) ※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[협정문 제6.15조 2항]- 8개 항목(아래 참조)						
	유효기간	발급일로부터 4년						
	제출면제기준	미화 1천 불 이하의 소액물품						
	참고사항	[협정적용 영역] 미국 50개 주, 워싱턴 DC : 원산지 부호 US, 푸에르토리코 : 원산지 부호 PR ☞ 팜, 사이판 등 그 밖에 미국의 자치령은 협정대상 아님 C/O는 1회 사용원칙(분할가능) 다만, 한-미 FTA의 경우 증명일로부터 12월 이내의 포괄증명 가능						
원산지결정기준 (부호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WO :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- PSR : 전적으로 어느 한 쪪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,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-가(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) 또는 부속서 6-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,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, 그리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- PE :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<p>※ WO (Wholly Obtained), PSR (Products Specific Rules), PE (Produced Entirely)</p>						
부가가치계산방법	계산방법	공제법(BD : Build-Down Method), 직접법(BU : Build-Up Method), 순원가법(NC : Net Cost Method) *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은 직접법, 공제법, 순원가법 선택적 사용						
	부가가치기준	직접법 30~40%, 공제법 35~55%						
	기준가격	조정가격(FOB)						
	비고	순원가 : 총원가에서 공제비용*을 제한 가격(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하여 적용) * 공제비용 : 판촉, 마케팅, 판매 후 서비스, 로얄티, 운송·포장 및 포장, 이윤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						
역외가공	품목	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항 결정						
	지역							
	가공비							
제3국발행시송장		가능						
원산지증명서	검증방법	직접, 간접(섬유류)						
	검증주체	수입국 세관, 수출국 세관(의류 및 섬유)						
	회신기간	12개월 이내 수출국 결정						
	회신주체	직접 - 수출자, 간접 - 수출국 세관						
	미회신 조치	협정관세 적용 제한						
	근거조항	제4.3조(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), 제6.18조(검증)						
참고사항		<p>■ 수리 또는 가공*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1조 4항</p> <p>1.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. 한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</p> <p>* 수리·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-[참조]협정 제2.6조 (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)</p> <p>-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-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</p> <p>■ 한-미 FTA는 HS2002 기준으로 협상타결"연계표(HS2012 ↔ HS2002)"를 참고하여 작성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서류명</td><td>품목번호 작성기준</td></tr> <tr> <td>원산지증명서, 협정관세적용신청서</td><td>HS2002</td></tr> <tr> <td>수출입신고서</td><td>HS2012</td></tr> </table> <p>■ 원산지증명에 필요한 항목[협정문 제6.15조 2항]</p> <p>① 증명인의 성명(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) ② 상품의 수입자(아는 경우에 한한다) ③ 상품의 수출자(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) ④ 상품의 생산자(아는 경우에 한한다)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(포괄증명의 경우)</p>	서류명	품목번호 작성기준	원산지증명서, 협정관세적용신청서	HS2002	수출입신고서	HS2012
서류명	품목번호 작성기준							
원산지증명서, 협정관세적용신청서	HS2002							
수출입신고서	HS2012							